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53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전진숙 · 최혁진 · 전용기
김정호 · 양부남 · 정준호
안도걸 · 박균택 · 박홍배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 · 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7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7(실패확인) ① 공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패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공단은 실패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패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패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패확인원 또는 실패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패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③ 제81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1조의7(실태확인) ① 공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1. 체납자의 거소 · 수입 ·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u> <u>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u> <u>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u> <u>② 공단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u>

제119조(과태료)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u>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u> ③ <u>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1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	---

부과 · 징수한다.

-----.